

의정부지방법원 2015. 2. 13 선고 2014가단2727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1. K

변론 종결 2015. 1. 30.

판결 선고 2015. 2. 1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도면 표시 8, 9, 4, 3, 10,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165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강원도 철원군 L 전 1903㎡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2. 10. 17. 이를 낙찰받아 2002. 10. 29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M, N, 피고 C, D, B은 가.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, 9, 4, 3, 10,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165㎡(이하,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 지상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농산물간이집하장(이하,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의 공유자이다.

다. (1) M은 2003. 3. 4. 사망하였고, 피고 E, F가 이 사건 건물 중 M의 소유지분을 상속하였다.

(2) N은 2007. 12. 17. 사망하였고, 피고 G, H, I, J, O, K이 이 사건 건물 중 N의 소유지분을 상속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.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홍은숙

[별 지]

건물의 표시

강원도 철원군 전 1903㎡ 지상
 조립식 판벽지붕 단층 농산물간이집하장 165㎡, 끝.

토지 도면

강원도 철원군 전 1903㎡

